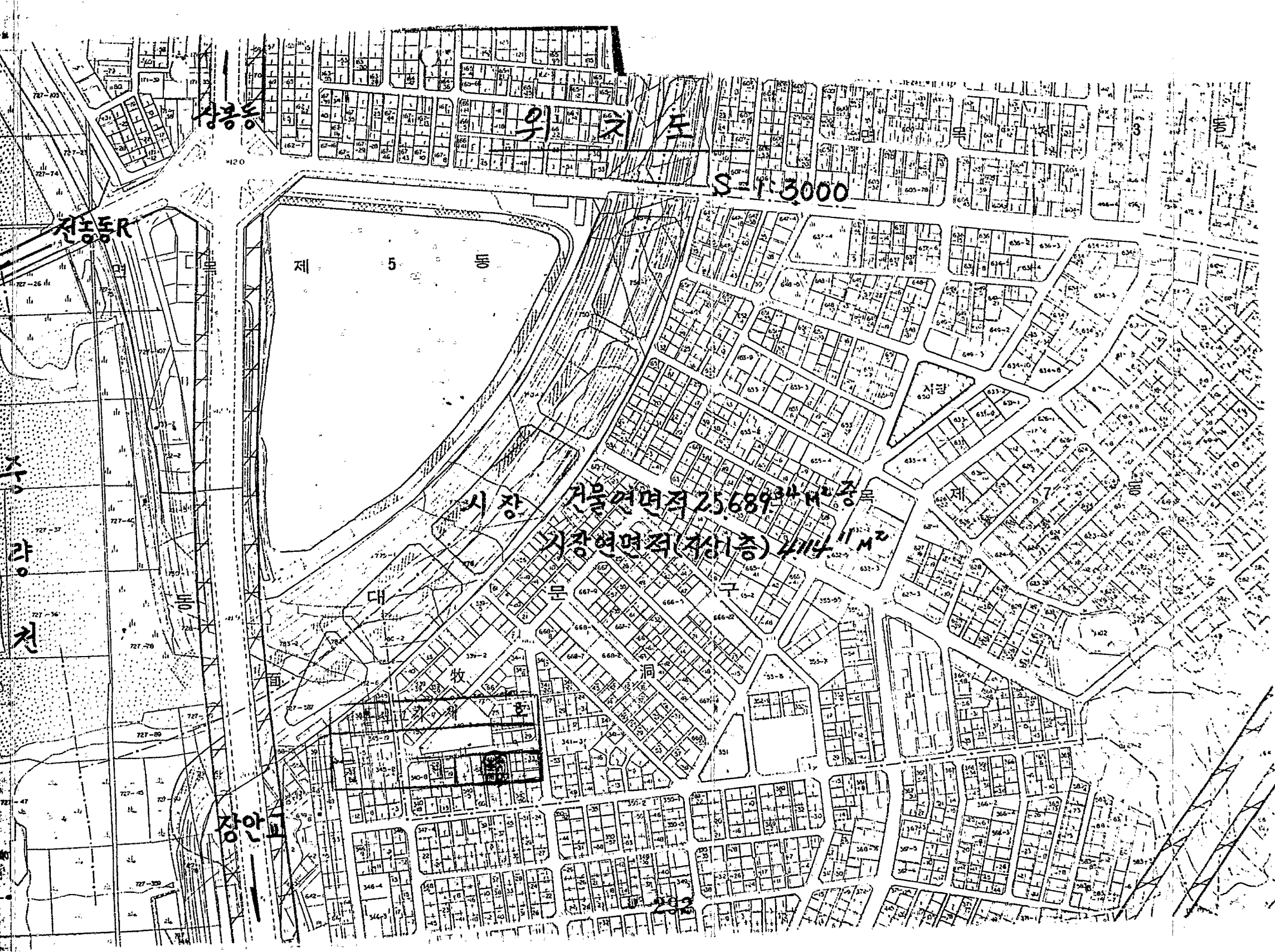






제5안
수신 : 동대문구청장(도시정비과장)
제목 : 같음
1. 도정 30310-2583(85.10.29)호 및 도정 30310-3098(85.12.30)호와 관련 임.
2. 위호와 관련 도시계획시설(시장) 변경결정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고시되었기 통보하니 관계과에 통보하여 도시계획업무에 간섭을 기하고
3. 도시계획사업(시장) 시행허가시에는 타법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절차를 시행 할것.
첨부 : 고시문 사본 및 도면 1부
제6안
수신 : 수신처참조
제목 : 같음
1. 우리시 도시계획시설(시장)이 별첨과 같이 변경결정 고시되었기 통보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첨부 : 고시문 사본 및 도면 1부. 끝.
수신처 : 상공과장, 도시계획과장

1.10  
도시계획과장



상봉동

위키도

S 1:3000

상봉동

제 5 등

시장 건물면적 25,689.34㎡ 중  
시장면적(상지층) 4,611㎡

대

문

구

牧

洞

장안동

상봉동

상봉동

## 사 유 서

### 1. 도시계획시설 결정 내용

- 위치 : 동대문구 면목동 750-7
- 결정일 : 1984. 7. 23 (서울시 고시 제412호)
- 규모
  - ┌ 총건축물(지하1-지상5층) 연면적 : 25,689.34M<sup>2</sup>
  - └ 시장면적(지상1,2층) 연면적 : 8,228.22M<sup>2</sup>

### 2. 변경사항

- 요청자 : 덕수종합개발(주) 회장 정 봉 운
- 사유 : 당초 건물의 1,2층에 시장을 결정하였으나 85.1.9 건축중 '86 아시아경기대회시 주경기장으로 지정되었고 주변여건상 변경 면적으로 시장 개설하여도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어 변경코자 함.
- 변경내용

구 분	당 초 (M <sup>2</sup> )	변 경 (M <sup>2</sup> )	비 고
건물연면적	25,689.34	25,689.34	
시장연면적	8,228.22	4,114.11	

- 관련법규 :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3호  
(경미한 사항의 변경)

### 3. 검토사항

- 상업지역으로 시장면적이 4,114.11M<sup>2</sup>로 시장법상 지장없음.